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864호)
- 김경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933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957호)

2023.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	4
2.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 연구역으로 지정	9
3.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6
※ 참고자료	19
1. 도시공원·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례 현황(2022년)	19
2. 사회복지시설 종류 및 노인복지시설 분류·현황	20

I. 개요

1.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8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28인
- (2) 제 안 일 : 2023. 9. 27.
- (3) 회 부 일 : 2023.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 및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현행보다 대상과 지역의 폭을 넓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청소년·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장소 또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2. 김경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9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경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3. 9. 27.
- (3) 회 부 일 : 2023.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4조).

3.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95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3. 9. 27.

(3) 회 부 일 : 2023.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4항제26호 신설).

II. 검토의견

1.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민병덕의원안 제9조제6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 개정안은 ①도시공원, ②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③어린이보호구역, ④어린이·청소년·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장소 또는 거리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민병덕의원안 제9조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신 설>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u>법률」에 따른 도시공원</u> 4.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u>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u> <u>절대보호구역</u> 5. 「<u>도로교통법</u>」에 따른 <u>어린이</u> <u>보호구역</u> 6. 그 밖에 어린이, 청소년, 임산 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장 소 또는 거리 중 간접흡연 피 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거리 ⑦ ~ ⑨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등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임을 감안하여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은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법률에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제9조제4항),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9조제7항).

□ 이에 따라 도시공원·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어 운용 중이며¹⁾, 2022년 기준, 도시공원의 경우 22,706개소 중 12,593개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17,316개소 중 15,34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참고자료1> 참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 개소 수, %)

구분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80,168	100
도시공원	12,593	7.0
교육환경보호구역	15,345	8.5
버스정류소	115,824	64.3
택시정류소	2,436	1.4
해수욕장	124	0.1
거리	788	0.4
광장	152	0.1
지하철역주변(출입구)	3,648	2.0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6,891	3.8
횡단보도	19,190	10.7
기타*	3,177	1.8

* (기타) 관광지, 문화재, 마을쉼터·마당, 주차장, 산책로, 등산로, 하천, 시장 등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도시공원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당수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도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있는데, 일부 지정이 안된 사유는 개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음.

1) 도시공원은 239개 조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230개 조례, 어린이보호구역은 50개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²⁾, 어린이 보호구역³⁾, 어린이·청소년·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 등의 경우에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9645호, 2023. 8. 16.개정, 2024. 8. 17. 시행)이 개정되어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달성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실외 장소·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의 주요 범위는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 부처 및 협회 의견>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도시공원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실외 공간·장소·거리는 법률 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행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필요시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 •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 어린이·청소년·임산부 등 출입이 잦은 지역·장소) 입법 취지는 타당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하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밖 경계선 30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정 불필요함.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범위는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한국담배협회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당초 지정목적과 흡연 피해 방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일괄 규정하는 경우 어린이가 받는 흡연 피해의 수준 정도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일선 행정차원의 관리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 지자체의 조례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법 수용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직선거리 50미터 범위 내에는 논·밭 등이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도시공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하여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전체 도시공원을 일괄지정하기 보다는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어린이·청소년·임산부 등 출입이 잦은 지역·장소)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김경만의원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28호까지 신설, 제34조)

- 개정안은 ①주유소,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소, ③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임(김경만의원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제34조).

현행	김경만의원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u><신설></u>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 설>

<신 설>

26.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생 략)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29. (현행 제26호와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
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0
만원 -----.

<삭 제>

<삭 제>

④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도 있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주유소나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⁴⁾

<주유소 발화요인별 화재 현황('17년~'21년)>

(단위: 건)

발화요인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전기적요인	5	1	0	6	3	15
기계적요인	2	1	1	0	1	5
화학적요인	2	2	3	0	0	7
부주의 (담배꽂초)	3 (1)	2 (1)	4 (2)	1 (0)	2 (1)	12 (5)
기타	1	3	2	0	0	6
계	13	9	10	7	6	45

※자료: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재구성

□ 개정안은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됨.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서울·부산·광주·강원·전남·세종 등에서는 주유소 및 충전소를, 경기도·인천·충북 등에서는 주유소를, 경남은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 취지는 간접흡연에 의한 다른 흡연자 또는 비흡연자의 ‘건강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화재위험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

□ 참고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에 따른 인명 피해를 방지 위한 ‘화약류 제조·판매·저장 취급소와 LPG 충전소’, ‘항공기 및 여객철도’, ‘문화재 주변 지역’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개별 법률 상 흡연행위 규제 현황>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과태료)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의 흡연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2023.7.21.)), 박주민의원대표발의(2023.6.22.), 조명희의원대표발의(2023.7.5.), 강병원의원대표발의(2023.7.7.)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

제50조(벌칙)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철도안전법」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아울러, 개정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다른 경범죄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취지와 상이하고, 현행 개별법에서 화재·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시설 내 흡연행위 규제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흡연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며, 과태료는 다른 경범죄 과태료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규제 수용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침뱉는 행위는 3만원, 음주소란행위는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관련 부처 및 협회 의견>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지정 취지는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위해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동 시설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과태료 상향) 다른 경범죄 과태료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에 책정될 경우 규제 수용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법 제 처	「국민건강증진법」은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장 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공중이용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화재예방 목적으로 ‘석유제품 판매 장소’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법에 흡연 금지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김승원의원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을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김승원의원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현행	김승원의원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⑤(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25. (생략) <u><신설></u> <u>26. (생략)</u> ⑤ ~ ⑨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u>2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u> <u>27. (현행 제26호와 같음)</u> ⑤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종사자·이용자·방문자 등의 간접흡연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나, 노인요양시설은 현행법 제9조제4항제21호에 따라 금연구역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참고자료 2> 참조).

<노인요양시설 현황>

구분	시설현황(개소)	현황별 비율(%)
계	4,346	100
서울	229	5.3
부산	97	2.2
대구	141	3.2
인천	392	9.0
광주	89	2.0
대전	103	2.4
울산	39	0.9
세종	17	0.4
경기	1,549	35.6
강원	225	5.2
충북	226	5.2
충남	250	5.8
전북	184	4.2
전남	234	5.4
경북	305	7.0
경남	206	4.7
제주	60	1.4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이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7) 「국민건강증진법」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도시공원·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례 현황(2022년)
-------	--------------------------------------

(단위: 개)

시도	제정 조례 수 (전체 행정구역)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합계	243(243)	239	230	50
서울	26(26)	26	26	0
부산	17(17)	17	17	7
대구	10(10)	10	10	1
인천	11(11)	11	11	0
광주	6(6)	6	5	1
대전	6(6)	6	6	2
울산	6(6)	6	6	0
세종	1(1)	1	1	0
경기	32(32)	32	32	14
강원	19(19)	19	18	4
충북	12(12)	12	12	0
충남	16(16)	16	15	2
전북	15(15)	15	11	3
전남	23(23)	21	20	3
경북	23(23)	21	21	1
경남	19(19)	19	18	12
제주	1(1)	1	1	0

【참고 2】 사회복지시설 종류 및 노인복지시설 분류 · 현황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류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 노인복지시설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노인	생활	○ 의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용	· 노인복지주택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
		○ 여가	· 노인복지관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